

### ③ 재산세율 차등화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상한을 인하)

〈 현 행 〉	〈 조 정 〉
· 모든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	· 공시기격별 차등적용(인하)
· 직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	⇒ 3억 이하 : 100분의 105 - 3억초과 6억이하 : 100분의 110 - 6억초과 : 현행유지(100분의 150)

이와 함께 8.31 부동산정책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에 따라 거래세율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인하하였다.

### 〈 주택거래는 개인·법인 불문하고 2%로 인하 〉

〈 현 행 〉	〈 조 정 〉
· 개인간 거래 2.5%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5%, 등록세 1.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2.0%, 등록세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종전의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에 과세되는 종합토지세와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가 있었고, 그 중 종합토지세는 1980년대 후반 토지에 대한 투기가 심하게 되고 국가 전반의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만큼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의 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1990년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이후 15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4년 말 보유세제개편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어 지방세부분은 재산세로 통·폐합하고, 국세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전에 종합토지세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